

2019년 『청년취업 희망카드』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9년 대전광역시 『청년취업 희망카드』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19년 3월 15일

대전광역시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19년 대전광역시 『청년취업 희망카드』
- 모집기간 : 2019년 4월 1일부터 / 매월 1~10일 상시 접수(단, 예산 소진시까지)
- 지원대상 : 2,500명 / 만 18세 ~ 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
- 지원규모 : 최대 300만원 / 월 50만원 × 6개월
- 지원내용 : 구직활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 지원
 - 직접비(학원수강료, 교재구입비 등), 간접비(식비, 교통비 등)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(www.youthpassdajeon.kr) 온라인 접수
- 선정절차 :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방문제출 → 자격확인·심사 → 선정 → 약정체결 및 교육(필참) → 지원개시(카드발급 및 포인트 배정)
- 지원방법 : 청년취업 희망카드(포인트 차감방식)

2 신청 자격 요건

-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,
 - (나이)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
 - (거주)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
 - (학력) 1)최종학교* 졸업·자퇴 후 2년 경과한 자 또는 2)대학(교)·대학원 졸업·학년 재학생(휴학생 포함)
 - * 최종학력 기준 : 고등학교·대학(교)·대학원 중 '17년 2월 졸업자까지 해당 ('18 ~ '19년 졸업자는 신청 불가)
 - ☞ 단, '17년도 졸업자 중 2월 이후 졸업한 경우, 신청일 기준 졸업증명서상 졸업일로 기간을 산정하여 졸업 후 2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있음
 - (소득)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미만인 자

【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/ 기준 중위소득 150% 】

(단위:원,월)

| 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
|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직장 | 82,923 | 142,729 | 183,286 | 226,441 | 272,807 | 310,158 | 348,036 | 410,509 |
| 지역 | 54,701 | 142,335 | 191,312 | 245,305 | 297,628 | 336,809 | 380,294 | 449,143 |

※ 장기요양보험료 제외

☞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

- ①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수 확인
 - ②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
 - 예) '19년 4월 신청자 : '19년 3월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
- 신청 전 홈페이지(www.youthpassdajeon.kr) 『사전 자가진단』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자격 해당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음

※ 지원 제외 대상

- 고등학교·대학교·대학원 졸업·자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
-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
 - * 단,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졸업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,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 가능
- 주 30시간 이상 취업 근로자 또는 창업자(사업자등록 등)
 - * (취업의 기준)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정규직, 비정규직 여부 및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
 - * (창업의 기준)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
- 실업급여 수급자, 청년구직활동 지원금,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 참여중인 자
 - * 단, 정부사업 완료 또는 중단한 경우, 완료·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
- '17~'18년도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참여자 및 사업지원 중단자(취업자, 부정수급자 등)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 가구 청년

3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

○ 구비 서류 : 방문제출 원칙

| 필수 서류 | 선택 서류(해당자만) |
|--|--|
| ① 구직활동계획서(온라인 신청 후 인쇄) 1부 | |
| ② 주민등록 초본 1부(신청자 본인) | |
|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| |
| ④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(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) | * 자퇴 시 자퇴확인서 |
|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(상용 피보험자용) | *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: 근로계약서 |
|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(본인이 속한 건강보험가입자) | *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(또는 의 료급여증) 사본 |
|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) | |
| ⑧ 기타 자격요건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| |

☞ (붙임1) “구비서류 발급방법” 필독

* 유의사항

-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,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.
(보완 통지 후 1주일 이내 제출)
-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(기관 및 인터넷)분에 한해 유효함.
- 서류 미비자의 경우 해당 월에 심사가 불가하여 자동 신청 취소(추후 재신청 가능)
- 팩스,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,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
- 반드시,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온라인 미신청자는 서류 접수 불가

○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: 제출기간 및 장소는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공지(매월 10일 내외)

4 신청 방법 및 절차

- 신청 방법 : 온라인 홈페이지(www.youthpassdaejeon.kr)로 신청
- 신청 기간 : 상시 모집 (매월 1일 ~ 10일까지 신청자에 대해 당일 심사)
- 선정 절차
 - ① 희망카드 홈페이지(www.youthpassdaejeon.kr) 접속 ⇨
 - ② 신청자격 확인(홈페이지 내 사전 자가진단 활용) ⇨
 - ③ 회원가입【개인정보 입력, 약관동의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등)】 ⇨
 - ④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(매월 1일 ~ 10일) ⇨
 - ⑤ 서류 방문제출 (제출기간 및 장소는 희망카드 홈페이지 ‘공지사항’ 참조) ⇨
 - ⑥ 심사 ⇨ ⑦ 선정(이메일 및 홈페이지 확인) ⇨
 - ⑧ 약정체결 및 교육 ⇨ ⑨ 카드발급 및 포인트 사용 시작

5 선정 기준

- 선정방법 : 정량평가 + 정성평가
 - (정량평가) 신청 자격기준* 등 선발기준 적합 여부 평가
 - * 나이(주민등록번호 기준), 거주지 및 거주기간(신청일 기준), 미취업 여부, 가구소득, 타사업 중복 참여 여부, 기타 서류 제출 여부 등
 - (정성평가) 구직활동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등 검토
 - (최종선정)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가부 결정으로 최종선정

6 최종 선정 및 발표

- 심사기간 : 매월 1일 ~ 10일까지 신청자에 대해 심사 및 선정
 - * 평가 일정은 매월 신청량에 따라 희망카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
- 최종선정 : 심사 완료된 대상에 대해 매월 1회 선정
 - * 단, 신청량에 따라 심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
- 결과안내 : 개인별 이메일 확인 또는 희망카드 홈페이지 확인
 - * 희망카드 홈페이지 주소 : www.youthpassdaejeon.kr
 - * 개인별 이메일은 사업 신청 시 본인이 작성한 이메일 통보
- 최종 선정자 필수 진행사항 : 약정체결 및 교육(본인 참석)
 - * 교육일정 개별 통보 및 희망카드 홈페이지 '공지사항' 확인
 - * 필수 진행과정(약정체결 및 교육) 미 실행 시 최종 제외됨

7 기타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서류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반려(취소)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기간 중 취업·창업하거나 대전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**자진하여 신고**하여야 하며, 미신고시 지원이 종료(중단)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지원에 따라 수급액 삭감 등의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청년취업 희망카드 선정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**약정체결 및 교육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며**,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되며 추후 재신청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.
- 기타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(☎042-719-8325~8)로 문의바랍니다.

붙임1

구비서류 발급방법

| 필수 서류 | 발급 방법 |
|---|---|
| ① 구직활동계획서 | · 희망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인쇄 |
| ②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| ·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(http://www.minwon.go.kr) 등 ☞ 신청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발급분에 해당 |
| ③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(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) | · (졸업자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· (자퇴 시) 자퇴확인서 · (졸업학년 재학생·휴학생)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☞ 대학교·대학원생 및 방송대·사이버대 재학생 · 해당대학 민원실 ,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(http://www.minwon.go.kr) 등 |
|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(상용 피보험자용) | · 서류발급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이용 ☞ 회원가입 → 조회 →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(공인인증서 필요) * 고용보험 상실일이 없는 경우 (주30시간 미만의 근로자, 아르바이트 등)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 *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☞ 인쇄를 클릭하여 인쇄 후 제출 ☞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종류가 다른 경우도 인정되지 않음 |
| ⑤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| · 인터넷 이용 : 건강보험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회원가입 → 방문자별 맞춤메뉴(개인) → 조회 및 발급 →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*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므로, 희망카드 신청자가 주보험자가 아닌 경우, 건강보험 가입자가 발급 요청하여야 함 |
| ⑥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| ☞ 신청일 기준 2019년도 전체 납부내역이 나와야 함 ☞ 발급 문의 : 고객센터(T.1577-1000) 이용 |
| ⑦ 기타 자격요건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| |

붙임2

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항목(예시)

☐ (지원항목) 구직활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

* 항목별 지원 예시

| 구분 | 지원 항목 | 내 용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직 접 비 | 교 육 비 | · 취·창업 진로 및 창업교육비, 자격증 취득 학원비 등 (단,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용자 등 제외) · 이력서 작성법, 면접요령 등 컨설팅 비용 |
| | 면 접 비 | · 면접 및 시험 응시 등을 위한 복장대여, 이·미용비, 사진촬영비, 숙박비(시외지역) 등 · 기타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 |
| | 자격증 접수비 | ·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접수비, 어학시험 응시료 등 |
| | 교재·도서구입비 | · 취업 준비 및 구직에 필요한 교재 및 도서구입비 |
| 간 접 비 | 교 통 비 | · 면접 및 시험 등 취업 활동을 위한 시외 교통비(기차, 버스 등) · 시내 교통비(시내버스, 지하철 등 후불 교통비) ☞ 개인적 사유(연령, 신용불량 등)로 교통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비 지원 불가 |
| | 식 비 | · 월 20만원 한도 지원 |

* 항목별 지원불가 항목(예시)

| 구 분 | 지원 불가 항목 |
|----------|---|
| 교 육 비 | ▪ 진학관련 입시학원 |
| 교재·도서구입비 | ▪ 잡지류, 만화, 성인물, 음반 등을 제외한 도서구입만 가능 |
| 교 통 비 | ▪ 주유비, 택시비, 고속도로 통행료, 선박 및 항공요금 등 |
| 식 비 | ▪ 음주비, 물품구입비 등 |
| 기 타 | ▪ 당구장, 볼링장 등 레저업소 및 사치향락업소 |
| | ▪ 자산성 비품(PC, 태블릿PC, 핸드폰, 안경 등), 의류 및 잡화 구입비, 기타 생활용품 구매 등 |
| | ▪ 대학등록금(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등록비 포함) |
| | ▪ 공과금, 수입인지, 여권발급 비용 등 각종 수수료 ▪ 병원진료비, 의약품 구입비 등 |

☞ 자세한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은 청년취업 희망카드 이용자 매뉴얼 및 유의사항 필독